#### 브리핑 자료 사전배포

※ 5.13일(월) 브리핑, 5.14일(화) 조간 보도 예정인 보도자료의 별첨자료이므로, 엠바고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F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

2024. 5.



I . 개 요 ·································	1
Ⅱ. 부동산F 평가기준 개선방안	2
1. 평가대상 확대	3
2. 평가등급 세분화	3
3. 평가기준 구체화	4
4. 사후관리 강화	5
Ⅲ. 평가기준 개선 시 영향	6
1.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6
2.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6
Ⅳ. 평가 및 향후 계획	7

## I.개요

- □ 금융업권은 모범규준 등 자율기준에 따라 분기별로 부동산PF 사 업성 평가를 실시 중이나
  - 현행 기준은 PF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여,
    - \* 브릿지론 평가기준 부재, 평가지표가 주로 연체·부도 등과 관련되어 선제적 위험관리 한계 등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PF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음 에도 **사업성 부족 사업장 선별** 및 **질서 있는 정리에 한계** 노출\*\*
    - \* PF대출 연체율(%): ('21말) 0.37 → ('22말) 1.19 → ('23.9말) 2.42 → ('23말) 2.70
    - \*\* 동 상황 지속 시 **금융회사 자산건전성 악화**와 함께 **건설사 경영난 가중**, 브릿지 사업장의 **본PF 미전환·착공 지연**에 따른 **주택시장 불균형** 우려
- □ 이에 금융감독원은 현재의 부동산PF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장 재구조화·자금 선순환 촉진 등 PF시장 연착륙을 위해
  - 지난 1.26일부터 '부동산PF 평가 개선반'을 구성하여 부동산PF 사 업성 평가의 객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 □ 각 **금융업권은 개선된 평가기준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여 **'24.6월**부 터 **평가**할 예정이며,
  - 최초 평가시에는 연체 등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이후 만기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평가할 예정



## $\Pi$ . 부동산F 평가기준 개선방안

- ① (평가대상 확대) 현재 관리중인 부동산 PF대출(본PF, 브릿지론) 외에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및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
- ② (평가등급 세분화) 평가등급을 현행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여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관리 유도
- ③ (평가기준 구체화) 평가기준을 사업장별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기준 신설) 및 본PF로 구별하고,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여 구체화
- ④ (사후관리 기준 마련) 사업성 부족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금융회사의 평가결과에 대한 점검 강화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 1 평가대상 확대

- □ (현행) 본PF, 브릿지론에 대해 사업성 평가 실시
- □ (개선) 부동산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sup>1)</sup>, 채무보증 약정<sup>2)</sup>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sup>3)</sup>를 포함하여 평가대상을 확대
  - 1)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산 개발 사업 목적의 토지 매입자금 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130% 초과) 조건을 충족하여 일반대출로 취급한 여신
  - 2) 금융회사가 PF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해 제공한 채무보증 약정
  - 3)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
  - 이에 따라, '23년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 수준

# 2 평가등급 세분화

- □ (현행)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 보통, 악화우려 등 3단계로 구분
- □ (개선)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
  -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하 도록 하여 적극적인 사후관리 유도

#### <사업성 평가등급 세분화>

현행(3단계)		양호	보통	악화	우려
	등급 정의	사업성 및 사업 진행상황이 양호	향후 <b>사업성 저하</b> 잠재요인 존재	사업진행 지연, 시 <b>사업추진</b> 이 <b>곤란</b>	·업성 미흡 등으로
개선(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급 정의	사업성 및 사업 진행상황이 양호	<b>일시적 애로요인</b> 이 있으나 사업진행에 <b>큰 차질이 없다</b> 고 판단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 예상	지속적·중대한 애로 요인으로 추가적인 <b>사업진행 곤란</b>

# 3 평가기준 구체화

- □ (현행) 본PF 중심으로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평가지표가 부재
  - 본PF에 대해서도 사업성보다는 **연체·부도 여부** 등에 대한 **단편적인** 체크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어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한계
- □ (개선)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여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였으며,
  - 각 평가등급별 기준(평가예시)을 PF 사업진행 단계별 핵심 위험요 인\*을 반영하여 구체화
    - \* (브릿지) 토지매입, 인허가, 본PF미전환, (본PF) 공사진행, 분양, 시공사 (공통) 금융위험(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수익구조위험(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 또한, 최종 평가등급은 한 개 지표가 아닌 다양한 위험요인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평가기준의 경직성을 완화\*
    - \* 유의·부실우려 등급은 평가기준 2개 이상 해당 시 부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등 사업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내부 위험관리절차(리스크관리위원회 승인 등)를 거쳐 예외 평가 허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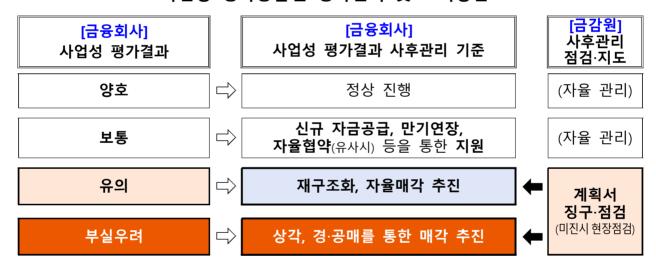
#### <평가기준 개선 전·후 비교(유의·부실우려 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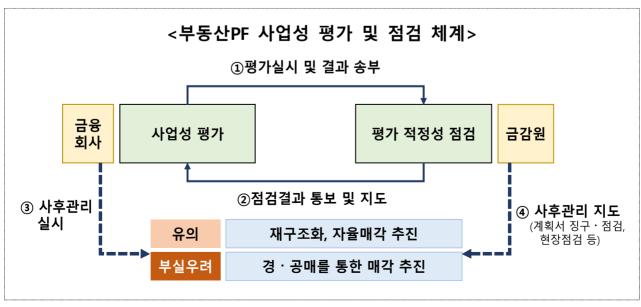
< 공기기군 개선 선·우 미교(규의·구열구터 등급)>								
현 행			개 선					
평가기준(예시)	구	규	<평가예시> 다음 중 2개 이상 해당 시 등급 부여					
			- (토지매입) 최초 대출 만기 도래 & 토지매입 미완료					
	유의	브릿 지론	- <b>(인허가·본PF전환)</b> <sup>①</sup>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b>상당한 기간</b> 예 6개월 경과 &					
-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보증			<b>인허가 미완료</b> 또는 <sup>©</sup> 인허가 완료 후 상당한 기간예 12개월 경과 & <b>본PF미전환</b>					
			- <b>(수익성) 수익구조</b> (총사업비, 시장 수급 상황 등) <b>상당히 악화</b>					
			- <b>(기타)</b> 시행사 <b>구조조정</b>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b>중단</b>					
ᄭᅶ		본PF	- (공정) 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					
조대성 괴기			- <b>(분양) <sup>①</sup>계획 대비 상당히 부진</b> (예: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60% 미만)					
심애 일정으로 인한 진행 불가			- <b>(수익성) 수익구조</b> (총사업비, 시장 수급 상황 등) <b>상당히 악화</b>					
			- <b>(기타)</b> 시행사·시공사 <b>구조조정</b> (자율협약, 워크아웃, 회생절차) <b>중단</b>					
- 계획 대비 2년 이상 장기 지연		공통	- (금융) 여신만기 3회 연장 / (연체유예) 연체이자 납부없이 만기연장					
			· (경공매) 경공매 2회 유찰 / (연체) 연체 중					
			- <b>(토지매입)</b>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b>장기간</b> (예 6개월) 경과 & <b>토지매입 미완료</b>					
- 비우량 시공사 지급보증·채무 인수 & <b>부</b>		브 <u>릿</u> 지론	- <b>(인허가·본PF전환)</b> <sup>①</sup> 최초 대출 만기 도래 후 <b>장기간</b> (예 12개월) 경과 &					
			<b>인허가 미완료</b> 또는 <sup>©</sup> 인허가 완료 후 장기간에 18개월 경과 & <b>본PF미전환</b>					
			- <b>(수익성) 수익구조</b> (총사업비, 시장 수급 상황 등) <b>매우 악화</b>					
	부실		- ( <b>공정</b> ) 계획 대비 <b>매우 부진</b>					
사업장이 양호	우려		· <b>(분양)</b> <sup>①</sup> 계획 대비 <b>매우 부진</b> (예: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시 50% 미만)					
등급이 아닌	• •		또는 <sup>②</sup> 준공예정일 이후 <b>장기간</b> (예: 18개월) 경과 & <b>매도 등 미완료</b>					
경우			- <b>(수익성) 수익구조</b> (총사업비, 시장 수급 상황 등) <b>매우 악화</b>					
		7 =	- (금융) 여신만기 4회 이상 연장 / (연체유예) 연체이자 납부없이 만기연장					
		유동	- (경공매) 경공매 3회 이상 유찰 / (연체) 연체 중					
_	평가기준(예시)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보증 사고  중대한 권리 침해 발생으로 인한 진행 불가  계획 대비 2년 이상 장기 지연  비우량 시공사 지급보증 채무 인수 & 사업장이 양호 등급이 아닌	증가기준(예시)     구       주택도시보증 공사의 보증 사고     유의       중대한 권리 침해 발생으로 안한 진행 불가     유의       계획 대비 2년 이상 장기 지연     비우량 시공사 지급보증 채무 인수 & 사업장이 양호 등급이 아닌     부실 우려	평가기준(예시)     구분       무택도시보증 공사의 보증 사고     유의 본序       중대한 권리 침해 발생으로 안한 진행 불가     공통       계획 대비 2년 이상 장기 지연     공통       비우량 시공사 지급보증 채무 인수 & 사업장이 양호 등급이 아닌     부실 우려       사업장이 양호 등급이 아닌     무려					

## 4 사후관리 강화

- □ (현행) 악화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고정이하) 이외 별도의 사후관리 기준이 미흡하여 사업장 재구조화 또는 부실여신 정리가 지연
- □ (개선) 유의(재구조화, 자율매각 등)·부실우려(상각, 경·공매 추진)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명시하고, 금감원이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점검\*
  - \* 금융회사 사후관리 계획 제출 → 금감원 점검 → 이행 미흡 시 지도(유사시 현장점검)
  - 다만, **본PF 사업장**,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경·공매가 아닌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 추진
    - \* 수분양자 여부, 공사진행 수준, 보증 계약 관계 등

#### <사업장 평가등급별 평가결과 및 조치방안>





## Ⅲ. 평가기준 개선 시 영향

## 1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 □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큰 **은행·보험업권**의 경우 **전체 PF여신 규** 모는 **크나 대부분 대형 본PF 사업장**으로 사업성이 양호하여
  - o 평가기준 개선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 □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업권**은 **브릿지론·토담대**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 **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가운데, PF 부실에 대비하여 그간 **선 제적 충당금 적립** 등으로 충분한 **손실흡수역량을 확충**해 온 점을 고려할 때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
    - \* '23년말 자본비율(규제비율): [저축은행] 14.35%(자산 1조이상 8%, 자산 1조미만 7%), [여전] 18.68%(카드 8%, 비카드 7%), [상호] 8.13%(농협 5%, 기타 2%), [새마을금고] 8.61%(4%)
- □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은 개선된 평가기준 적용 시에도 안 정적일 것으로 예상

## 2 |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 □ 건설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공사가 진행 중인 **본PF**의 공사중단에 따른 채무인수 시이나,
  - 금번 평가기준 개선에 따른 신규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대부분 브릿지론·토 담대 사업장일 것으로 예상되어 건설사 부담은 크지 않을 것<sup>\*</sup>으로 판단
    - \* 브릿지론·토담대 부실화 시 손실은 금융회사·시행사가 부담하여 건설사 영향은 제한적이며, 일부 채무인수 약정이 있더라도 담보매각으로 손실 축소 가능 예상
- □ 한편, **본PF**의 경우 건설사가 대부분 **책임준공 약정**, **신용보강** 등을 제공하고 있어 **우발채무 현실화 가능성**이 있으나,
  - 브릿지론 단계에서와는 달리 본PF 사업장은 사업성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공사를 중단하기보다는 대주단 및 이해관계자간 협의를 통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 실제 건설사의 **채무인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임

## Ⅳ. 평가 및 향후 계획

- □ 금번 제도개선으로 **PF사업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PF시장 신뢰 회복** 및 **정상화** 기대가 형성되고
  -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확대,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통한 PF시장 재진입 등 자금의 선순환 구조가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됨
- □ 이러한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수요 기반 확대**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 이에 은행·보험업권이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여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 \* 5월 중 협의체 발족, 6월 내 가동 목표
- □ 금융감독원은 향후 사업성 평가 진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 6월 평가의 경우에는 6월 사업성 평가(금융회사), 7월 평가결과 점검(금감원), 8월 평가결과 조정 예정
  -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 협약 개정**,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 **금융회사** 및 **건설사** 등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PF 시 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음

## [참고] 은행·보험업권 공동 신디케이트론 개요

- □ (대상) 금융권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정리대상으로 선정되어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정상 사업장은 선별적으로 포함)
  - \* 원리금 회수가 곤란하거나, 소송 등 법률 리스크 및 대주단간 분쟁이 있는 사업장 등 제외
- (유형) 차주 유형(예: 시행사, NPL社) 및 자금용도(예: 경락자금대출, NPL 채권매입 지원, 신규PF) 등에 따라 경락자금대출, 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선별적 지원) 등 3개 유형
- □ **(참여기관)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생보 2개사**(삼성한화), **손보 3개사**(메리츠삼성·DB)
  \* 추후 자금수요 증가 등 필요시 **참여 기관 확대 가능**
- □ (규모) 최초 1조원 조성 후 필요시 최대 5조원 적극 검토 (캐피탈콜 방식)
- ※ 본 신디케이트론은 부동산 PF 정상화 지원 등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검사·제재 규정상 **면책특례**(§27의2) 해당여부 및 **비조치의견서** 발부 등을 **적극 검토** 예정